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4.

발 의 자 : 유동수 · 강준현 · 김남근
민병덕 · 박민규 · 박선원
김현정 · 전용기 · 김교홍
노종면 · 허종식 · 박찬대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은 2020년 법 개정(법률 제17341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)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,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·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.

반면,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, 국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,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.

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,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

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5항·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).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임원”을 “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임원의 선임”을 “원장의 임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원장 및 감사는”을 “원장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원장 및 감사”를 “원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외부감사)”를 “(자체감사 및 외부감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,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,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

제24조제2항제2호 중 “원장 및 감사”를 “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

제31조제2호 중 “제16조”를 “제1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연구기관에 재임 중인 감사(監事)와 그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(監査)에 관하여는 해당 감사(監事)의 남은 임기 동안 제11조제5항·제6항, 제12조제1항·제4항·제5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임원과 그 직무) ① ~ ④ (생략)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(監事) 1 명을 둘 수 있다.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(監査)한다.	제11조(원장과 그 직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삭제> <삭제>
제12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)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 구회의 이사장이 임면(任免)한 다. ②·③ (생략)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.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⑥ (생략)	제12조(원장의 임면 및 임기) ① -----원장은----- ----- 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삭제> ⑤ 원장----- 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외부감사) <신설>	제16조(자체감사 및 외부감사)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, 이 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.

<u><신 설></u>	<u>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,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/u>
(생략)	<u>④ (현행 제6호 외의 부분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21조(사업)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	제21조(사업)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생략)
<u><신 설></u>	<u>6.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</u>
<u>6. (생략)</u>	<u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

제24조(이사회) ① (생략)	제24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연구기관의 <u>원장 및 감사</u> 의 임면에 관한 사항	2. ----- <u>원장</u> ----- -----
3. ~ 7. (생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8. <u>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</u>
8. (생략)	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비밀 유지의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31조(비밀 유지의 의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16조</u>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	2. <u>제16조제4항</u>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